

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, 배우자,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구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, 위촉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(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, 배우자,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</u></p>

관 련 법 령

장애인복지법

제5조(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, 배우자,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.